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가합592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신용보증기금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피고1. B영농조합법인

2. C

변론 종결2022. 8. 26.

판결 선고2022. 11. 18.

주 문

1. D와 피고 B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1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주식회사 E와 피고 B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1목록 제2, 6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9.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443,515,69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43,515,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B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D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주식회사 E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9. 7.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D에게 별지2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에게 별지2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10. 28. 접수 제982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 고 의 청 구 취 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위 청구취지 및 D와 피고 B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1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주식회사 E와 피고 B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1목록 제2, 6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9.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3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가 소송의 목적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승낙이 없어 소송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9.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주식회사 E(주채무자), D(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와 같다)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E는 2018. 12. 20.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전승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주식회사 E, D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E, D에 대한 일반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2021. 9. 30.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민사소송법 제80조), 소송탈퇴의 경우 동의간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송에 그대로 남아 있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와 피고 B영농조합법인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주식회사 E와 위 피고 사이에 별지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1.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9. 2. 11. 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E와 위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참조).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 승계참가인이 2020. 11. 3. 피고 C를 상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850호, 이하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22. 4. 27.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전소와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채권자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만 달리할 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전소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패소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부분에 대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부분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상원

판사이인경

판사박동우

별지